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339
----------	------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29 일대	64,133.0	감)9,110.9	55,022.1	2007.10.25. (서울시고시 제2007-390호)	경춘 제2녹지
폐지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93-12 일대	5,036.4	감)5,036.4	-	1985.01.18. (건설부고시 제23호)	태릉녹지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장	경관광장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대	7,535	감)7,535	-	2016.09.01. (서울시고시 제2016-267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문화공원	노원구 공릉동 29번지 일대	-	증)40,293	40,293	-	-

3. 입안사유

- 2010년 폐선된 경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이 2018년 6월 완료됨에 따라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구 화랑대역(등록문화재 제300호) 일대를 철도와 문화 관광을 테마로한 문화공원으로 결정·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증대되는 문화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녹지, 광장
- 기타구역 : 개발제한구역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9. 8. 13. ~ 8. 26.(14일간)
- 열람공고게재 : 일간신문(아시아 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 의견청취결과 :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자연녹지이자 일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금회 신설계획한 도시계획 시설(공원) 내 신·증축계획(3개동)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건축범위 결정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증축계획 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바목, 사목에 따른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 및 편익 시설로서 별도의 건축범위 결정 필요성 없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제시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내 국유지 현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자원조달계획 제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대상 국유지 자원조달계획 수립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계획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차계획대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회 신설계획한 공원부지 밖 별도부지에 계획한 바, 현황 소유자(국토부)를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라 부설주차장 및 법정주차대수 확보계획임. 	반영
공원조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사업 추진 시 우리시 도시공간 개선단과 사전협의하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간개선단과 사전협의 하겠음. 	반영
물순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매입 후 사업 완료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매권 대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매권 대상 아님 	반영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인·허가 전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빗물유출 가능여부 및 빗물관리 시설 도입 필요성 등을 우리구 치수과와 협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겠음. 	반영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이상인 경우로 한정)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 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지 중 일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태릉과 강릉(사적201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원형복원예정지임. • 해당지역 내 문화재 및 주변환경 현상 변경 행위를 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방지를 위한 협의 및 절차 준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소유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고 터파기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시설도입으로 인한 훼손은 없으므로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사항이 없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구역내 문화재청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별도의 훼손을 하지 않을 것임. (문화재청 부지내 시설물 조성계획 없음) • 디오라마관 신축예정지가 현상 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임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릉동 29-59 필지는 문화재청 국유 재산으로 사용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소관 토지에 대해서 사용협의 완료 	반영

7. 노원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19. 9. 3.
- 의견청취결과 : 원안가결

8. 환경성·교통성·재해영향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기질 및 수질 등 총 14개 항목 검토
 - 결과: 환경 악영향 없음 및 경관변화 미비함(검토 완료)
- 교통성 검토
 - 가로 교통량 평일 2대/시 증가, 통행속도 0.2km~0.9km/h 감소
 - 교차로 교통량 평일, 휴일 5대/시 증가, 평균 0.7~0.1초/대 지체
 - 주차수요 20~21대 확보 필요
 - 결과: 주차장 확보 및 교통체계 합리화 필요

○ 재해영향성 검토

- 재해영향성평가 심의 개최 결과 별도의견 없음
- 결과: 조치계획과 관련계획 준수하여 시행

9. 기타

○ 재원조달계획

- 총 소요예산 : 6,6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확보		미확보	비 고
		집행	잔액		
계	6,600	1,850	4,100	650	
시 비	2,700		2,700		시 재배정
특교금	1,500	100	1,400		
특교세	600	600			
구 비	1,800	1,150		650	미확보:토지매입

○ 추진경위

- '78.08.30.: 경춘 제2녹지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
- '85.01.18.: 태릉 녹지 결정(건설부고시 제23호)
- '16.09.01.: 광장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호)
- '18.06. : 경춘선 공원화 사업 완료
- '19.08.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19.09.0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9.10.1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요청(區 → 市)

붙임 : 관련도면 각 1부. 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대상지 현황사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지정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변경

